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
----------	----

제출년월일 : 2003. 1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4년도부터 일·숙직 수당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 일·숙직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당직근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일·숙직수당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하고 지급액(30,000원)은 규칙으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나. 예산조치 :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④ (생략) (신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④ (현행과같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근거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당직및비상근무) ①~③생략

④당직및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근거 :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1.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 경비의 자율화

경비의 급격한 상승을 수반하지 않거나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자율 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하여는 편성기준을 폐지하여 지방이관,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

1) 공무원 일·숙직수당 기준 자율결정

○ 현 황

- 공무원 일·숙직수당은 2000년이전은 5천원, 2001년부터 1만원씩 지급
- 예산편성지침에 매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제시

○ 개선필요성

- 국가와 지방은 근무횟수,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획일적 기준계상은 실비변상 취지에서 불합리
- 당직시설상태, 근무인력, 지역여건에 따라 실비소요에 차이가 발생

○ 개선내용

-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